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1531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1531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8471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송유준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박세웅

변론 종결2022. 4. 14.

판결 선고2022. 5. 12.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8471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969,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C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투자회사로서, C회사에서 만든 'D'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싱글 650만 원 / 골드 1,950만 원 / 플래티늄 4,550만 원)을 구입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한 가상화폐인 E가 지급되고, E의 55%는 현금화하여 지급하며, 30%는 E 재구매에 사용되고, 10%는 수수료로 C회사에서 가져가며, 5%는 제휴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인 'F'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나아가 E는 증식하는 과정을 6회 거치면 C회사 본사에서 수익의 6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G라는 암호화폐로, 30%는 H라는 쇼핑 포인트로 각 지급하며, 10%는 수수료로 C회사에 지불하게 되는 구조의 투자이다.
- C회사의 투자자 모집 관련 수당지급 구조는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 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모집한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 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구조로서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 '강릉 C회사'는 위 C회사의 강릉 지역 내 조직이고, L는 그 회장으로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며, M은 그 사장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L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며 신규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사무실 운영,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L와 M는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고 2020. 1. 22.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L는 징역 2년, M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926), 그 항소심에서 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L는 징역 1년, M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20노61,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L, M를 가리킴)은 2018. 5.경 강릉 C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N에게 "C회사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조직으로서, C회사 광고권 투자는 E의 가치가 계속하여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회사는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확인된 조직으로서 피고인 L는 이미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C회사 강릉 ○ 사무실'을 운영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중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C회사 본사 회장인 P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이 2017. 6.경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18. 5.경 P가 기소되었기에 향후 C회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31. 4,550만 원을 피고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2018. 6. 12.

4,150만 원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총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는 한동안 C회사에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통해 C회사 투자 방식에 대하여 알게 되어 위 C회사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C회사에 투자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C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중 93,969,209원을 피고가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C회사를 운영하는 일당이 원고의 투자금 중 93,969,209원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투자매개자로서 그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거나 그 범행을 고의·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C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원고가 최초로 계정을 등록할 때 도와주기만 하였고, 그 후의 거래는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한 것이고 거기에 피고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설령 C회사를 운영하는 일당이 관련 형사판결에 기재된 사기의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93,969,209원을 편취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설명회에 참석을 권유하고 C회사 일당이 교육한 대로 들려주며 설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C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할 당시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기망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다단계 내지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그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방법으로 C회사 일당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 과실로 C회사 일당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창국

판사한승철

판사하승수